

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제43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행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마. 국토교통부장관은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대행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교육·훈련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교육·훈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 행위자가 교육·훈련 업무나 지역사회에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·훈련기관이 된 경우	법 제20조의4 제1항제1호	대행취소		

나. 교육시설,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	법 제20조의4 제1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대행취소
다. 교육·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경우	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	업무정지 6개월	업무정지 12개월	대행취소
라. 교육·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업무정지 12개월
마. 그 밖에 교육·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	업무 개선 명령		